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65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자가소비용직수입 설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금지 및 위반 시 과징금 부과	4
2. 자가소비용직수입 설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금지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 마련	10
3. 조정명령 관련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근거 마련	13
※ 참고자료	18
1.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현황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24.
3. 회부연월일 : 2024.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일정한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 제도를 규정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그 대상물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최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설비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들 사업자는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해 사용하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바,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수급상 필요성”을 파악하

여야 함.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천연가스 재고현황, 도입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획득 권한이 부재하여 조정명령 발령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수급 위기상황에서 적시에 조정명령을 발령하지 못했음.

이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조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에너지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물량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8제1항제2호).

나.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

스를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9제3항).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의 이행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3제2항).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4).

바. 조정명령 발령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제16호).

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자료제출요구 거부 내지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2호의2).

Ⅲ. 검토의견

1. 자가소비용직수입 설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금지 및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0조의9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략)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② (생략)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도시가스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제1호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수입 하거나,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아니 된다.

현행법 제10조의7제2항¹⁾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²⁾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의8³⁾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 수

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
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0조의9⁴⁾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비의 신설·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설비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들 사업자가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과 도시가스 공급을 선택해 사용하여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4)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도시가스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선택적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자가소비용직수입 설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금지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경제적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이 있는데⁵⁾,

현행법 제10조의8의 과징금은 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는 도시가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영업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으로 보이고,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과징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

5)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pp. 422~426

을 환수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으로 보임.

다만, 안 제10조의8제1항제2호는 과징금의 한도액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위반하여 사용한 도시가스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위반하여 사용한 도시가스 물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민간LNG산업협회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오가 있을 경우 사업정지 기간동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자가소비용직수입 설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금지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자가소비용
직수입 설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10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1조제2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② (생략)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 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 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 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u>수입</u>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수입 <u>하거나,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u> <u>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u> <u>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u> <u>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u> <u>시가스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u>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위 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가소비 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 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 또는 해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1조(벌칙)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3. ~ 15. (생략)	<u>2의2. 제10조의9제4항에 따른 자료를</u> <u>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u> <u>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u> <u>기피한 자</u> 3.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 대상물량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 대상물량 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되고, 국가 천연가스 수급 및 국내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개정안과 같이 형사처벌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한편, 안 제10조의9제4항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1조제2호의2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계자구의 통일성을 위하여 안 제51조제2호의2의 ‘자료’를 ‘자료나 물건’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조정명령 관련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의 이행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이하 “도시가스사업자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 및 제50조제16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지도·감독) (생략)	제40조의3(지도·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이하 “도시가스사업자 등”이라 한다)을 지도·감독한다.
<신설>	제40조의4(자료제출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5. (생략) <u><신설></u>	<u>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u> 제50조(벌칙) -----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제40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u>

현행법 제40조제1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20조제3항6)은 산업통상자

6)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
4.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5. 도시가스의 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7.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8. 삭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에 관한 조정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생략)

원부장관이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에 대한 조정(調整)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수급상 필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의 이행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정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40조의3제2항은 조정명령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40조제1항⁷⁾에 따르면 조정명령의 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만 해당되므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7)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둘째, 안 제50조는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54조⁸⁾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정명령 이행 및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⁹⁾.

8)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 ⑦ (생략)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④ ~ ⑦ (생략)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정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 자가소비용직

민간LNG산업협회는 개정안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에 기업이 예외없이 따라야 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강제적 표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4

수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성실한 자료제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제재 필요

※ 참고자료

1.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현황('25.2월 기준)

연번	사업자	등록일	용도
1	포 스 코	'05.05.10	산업용(포항·광양제철소)
2	SK E&S	'05.08.12	발전용(광양복합화력)
3	GS칼텍스	'09.06.25	산업용(GS여수공장)
4	중부발전	'14.11.25	발전용(세종열병합, 서울복합)
5	GS EPS	'16.10.28	발전용(당진복합화력)
6	나래ES	'16.11.23	발전용(위례열병합)
7	파주ES	'16.11.23	발전용(장문복합화력)
8	GS파워	'18.01.16	발전용(안양열병합)
9	S-Oil	'18.03.09	산업용(S-OIL 온산공장)
10	포스코인터내셔널	'18.11.14	발전용(인천포스코복합화력)
11	신평택발전	'19.04.25	발전용(신평택복합화력)
12	SK에너지	'20.03.12	산업용(울산공장)
13	고려아연	'20.10.06	산업용(울산공장)
14	한화솔루션	'21.05.14	산업용(여수공장)
15	현대케미칼	'21.11.04	산업용(대산공장)
16	SK하이닉스	'22.05.16	산업용(이천공장)
17	여주ES	'22.10.27	발전용(여주복합화력)
18	서부발전	'22.12.22	발전용(김포열병합)
19	롯데이네오스화학	'23.09.04	산업용(울산공장)
20	남부발전	'23.09.08	발전용(신세종복합)
21	SK 인천석유화학	'23.10.30	산업용(인천공장)
22	통영에코파워	'23.10.31	발전용(통영발전소)
23	울산 GPS	'24.03.04	발전용(울산지피에스발전소)
24	SK 멀티유틸리티	'24.03.04	열병합용·영전용설비용 (울산발전소)
25	동서발전	'24.11.27	발전용(음성·울산복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